



공익법인 관련 주요 개정세법 안내

안녕하십니까?

공익법인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근 개정된 세법내용을 알려드리니, 해당 사항을 유의하셔서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결산서류 공시 대상 확대

- **개정내용** 모든 공익법인(종교단체 제외)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**4개월 이내** 국세청 홈택스에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여야 함. 다만, 총자산가액 5억원 미만인면서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**간편서식**으로 공시할 수 있음
- **적용시기** '20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

출연재산 일정비율 의무지출 확대

- **개정내용**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(종교단체 제외)은 매년 수익용 재산의 **1% 이상**을 공익목적사업에 **의무지출** 하여야 함
- **적용시기** '21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

공익법인 의무이행 신고제 도입

- **개정내용**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**5% 초과하여** 출연·취득하거나, 계열법인의 주식을 총자산가액의 **30% 초과** 보유하는 공익법인 등은 매년 요건 충족 여부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**4개월 이내**에 **관할 지방국세청**에 신고하여야 함
- **적용시기** '21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

2021년 2월

세무서장 (직인생략)

공익법인 등 관련 문의는 윗면에 기재된 세무서 상담전화
또는 국세상담센터(국번없이 126)로 하시기 바랍니다.

공익법인 관련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주요 개정사항

결산서류 공시 및 외부 회계감사 대상 확대('20사업연도부터)

구 분	법 령	종 전	변 경
결산서류 공시 대상 확대	§50의3①	총자산 5억원 또는 수입금액 등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(종교단체 제외)	모든 공익법인(종교단체 제외) 다만, 총자산 5억원 미만인면서 수입금액 등 3억원 미만인 법인은 간편공시 가능
외부 회계감사 대상 확대	§50③	직전연도 총자산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(종교·학교법인 제외)	(추가) 수입금액 등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 20억원 이상인 법인

출연재산 공익목적사용 의무강화('21사업연도부터)

구 분	법 령	종 전	변 경
의무지출대상 확대 * 기준자산가액의 일정비율을 공익목적사업에 의무지출	§48②(7)	지분율 5%(10%)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한 성실공익법인 - 수익용 자산의 1%(3%)	(추가) 총자산 5억원 또는 수입 금액 등 3억원 이상인 법인 (종교단체 제외) - 수익용 자산의 1%
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사용 의무위반 명확화	§48②(1)	공익목적 외 사용하거나,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익 목적 등에 미사용한 경우	(추가) 3년 이후 공익목적 등에 계속 사용하지 않는 경우

* '22사업연도부터는 출연재산 운용소득 의무사용 비율이 80%로 상향 됨(일반·성실공익법인 통합)

주식초과보유 공익법인 의무이행 신고제 도입('21사업연도부터)

구 분	종 전	변 경
	성실공익법인 확인(§16②(2))	의무이행 여부 신고(§48⑪)
개요	주식 기준을 초과 보유하는 공익법인은 5년 마다 주무관청을 통해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성실공익법인 확인을 받아야 함	주식 기준을 초과 보유하는 공익법인은 매년 요건 충족여부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턴 4개월 이내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
요건	① 운용소득을 80%사용 ② 출연자등 이사 1/5 초과 취임 금지 ③ 자기내부거래 금지 ④ 계열법인 광고·홍보 금지 ⑤ 외부 회계감사의무 ⑥ 전용계좌 개설·사용 ⑦ 결산서류 공시 ⑧ 장부 작성·비치	①~④좌동 - 출연재산가액의 1% 이상 사용의무* 추가 * '22년 귀속부터 적용
제재	■ (요건 미충족시) 주식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부과	■ (요건 미충족시) 주식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부과 ■ (미신고 가산세 신설) 자산총액의 0.5%

※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(www.nts.go.kr) > 국세신고안내 > 법인신고안내 > 공익법인) 참고